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 개정이유 ◆

- 외부연구과제 수주를 장려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징수 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간접비 징수실적 산정 과제를 외부과제로 한정(제3조)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접비 징수금액에 가중치(1.5배) 부여(제4조)
- 포상 인원 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예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제5조)
- 포상대상자 추천 절차를 생략(제7조)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김 종 오 인

2026년 08월 07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6-2호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징수된”을 “징수된 외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의 1.5배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인원) ① 포상인원은 제2조의 대상자에 한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위 6명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우수상 1명
2. 우수상 2명
3. 장려상 3명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인원 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확정) 포상 대상자 확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부 칙(2026. 08. 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대하여는 2027회계연도 실적 포상 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정범위) 수탁 연구 과제 중에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 간접비가 <u>징수된</u> 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조(인정범위) ----- ----- ----- ----- <u>징수된 외부</u> 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4조(실적평가) 실적평가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간접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u><신 설></u>	제4조(실적평가) ① 실적평가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간접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의 1.5배로 한다.
제5조(포상기준) ① 제2조의 대상자에 한하여 각 대상자별 산학협력 간접비 징수금액 총액 기준으로 상위 우수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② 상위 우수교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최우수상 1명 2. 우수상 2명 3. 장려상 3명	제5조(포상인원) ① 포상인원은 제2조의 대상자에 한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위 6명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우수상 1명 2. 우수상 2명 3. 장려상 3명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인원 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선정방법)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본교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확정) 포상 대상자 확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